

기업의 공해문제, 확실한 해결방안 있다

폐놀사건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어처구니없게도 한차례의 폐놀유출사건이 발생해 후유증이 심상치않다. 이 와중에서 가뜩이나 음식에서 고생해오던 환경관리인들은 그나마 설곳이 없어 방황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났지만, 앞으로 환경오염을 자행한 기업은 발붙일곳이 없다. 기업의 환경관리는 곧 그 기업의 존립과도 직결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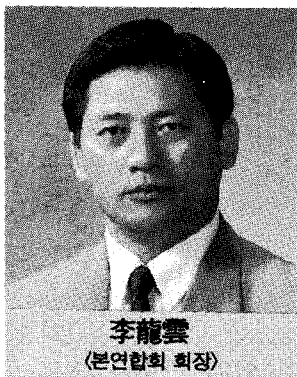
영리를 위해 설립된 기업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투자할 비용이 아까워 스스로 영리추구를 포기하겠는가.

기업의 환경관리는 마음먹기 나름이다. 기업 스스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자각해 환경오염방지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유능한 환경관리인들로 하여금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기업의 공해방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인들이 환경관리의 문제점이나 혹은 개선사항을 건의하거나 결재 한번 올리려해도 눈치를 살펴야한다. 게다가 시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인데도 중간결재단계를 두루거치다보면 사후약방문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환경관계법에 규정된 사업장 규모별로 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전담

부서의 설치는 고사하고 총무과나 공무과 등에 배속시켜 환경업무외의 잡일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뿐만아니라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다들 승진을 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제자리걸음



李龍雲
(본연합회 회장)

만 하고 있어 앞날에 대한 비전도 불투명하다.

법적으로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엄연히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인력이 기업주에게 월급을 받은 고용인이라는 한계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못한채 오히려 환경문제를 외면하는 기업주에 놀려 환경처 지도단속의 모면에만 급급해야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기업내에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가 되어있는데다가 현행 환경관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양벌규정이 악·오용되는 사례가 빈발해 이직을 하거

나 아예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것이다.

본 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자격증소지자중 30%만이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환경관리인들의 쉼을 더욱 무겁게 하고있다. 과연 이렇게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인들의 책임만 가중시킨다고 기업의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아무런 신분상의 보장책도 없이 그저 책임과 의무만 가중시키고 언제까지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사실 기업의 오염실태에 관하여 환경관리인들만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기업의 오염물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의 문제는 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관리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관리에 관한 한 전문가인 이들 환경관리인들이 이 나라의 환경을 보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기업의 압력에 상관없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